

대학원학칙 문화스포츠대학원 시행세칙

- 2004. 3.1 제정
- 2005. 3.1 개정
- 2005. 9.1 개정
- 2006. 3.1 개정
- 2007. 3.1 개정
- 2007. 9.1 개정
- 2008. 9.1 개정
- 2010. 3.1 개정
- 2010. 9.1 개정
- 2011. 3.1 개정
- 2012. 3.1 개정
- 2013. 9.1 개정
- 2015. 9.1 일부개정
- 2017. 9.1 일부개정
- 2018. 3.1 일부개정
- 2019. 3.1 일부개정
- 2019. 4.1 일부개정
- 2019. 9.1 일부개정
- 2021. 3.1 일부개정

<문화스포츠대학·문화스포츠대학원행정실>

- 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 문화스포츠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전통문화와 콘텐츠, 외국어, 스포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승 발전 및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- 제 3 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.
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(10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 4 조 (재입학의 제한)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.
- 제 5 조 (학과 또는 전공의 변경)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으나, 전공은 변경할 수 있다.
②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셋째 학기 초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1. 전공변경신청서
 2. 학업성적증명서
- 제 6 조 (수강신청 및 정정)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③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제 7 조 (휴학)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전 10일부터 개강 후 20일 이내의 정한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② 일반휴학 기간은 통산 2년(4학기)을 넘지 못한다. 단, 질병치료 및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③ 임신·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군복무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로 인한 휴학은 특별휴학으로써 일반휴학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.
 ④ 본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을 시행하지 않는다.
 ⑤ 본 대학원은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다.
- 제 8 조 (학점인정)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 ② 군 교육기관 및 제휴 타 대학원 수료자는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 ③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취득과목 인정은 현재 본인의 전공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제 9 조 (교육과정 및 선수과목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하며,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 입학자는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 10조 (수료 최소이수학점/시기 및 학기별 취득학점 상한)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를 위해 이수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, 수료시점은 매 학기 말로 한다.
 ② 학기별 취득학점의 상한은 교과학점 8학점(사회복지학과는 12학점)으로 하되, 선수과목 및 논문지도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.

학과	전공필수	전공	일반선택	합 계
영어번역학과 문학예술학과	0	16	10	26
사회복지학과	0	24	3	27
ICT콘텐츠학과	4	16	6	26
스포츠비즈니스학과	4	12	10	26
아동코칭학과	4	16	6	26

- 제 11조 (논문지도학점) 논문지도 학점은 논문지도 해당 학기마다 2학점(단, 사회복지학과는 3학점)으로 하며, 논문지도학점은 수료 최소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2조 (지도교수)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3차 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,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논문제출학위수여대상자는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 제 14조 ①항 3번에 의해 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는 4, 5학기 중 1회 지도교수 지도를 받는다.
- 제 13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4조 (학위청구 자격) ①수료 요건 충족자 또는 충족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종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된 자
 2. 논문제출학위수여대상자 : 5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지도 2학기 이상 이수 혹은 이수에정자
 3. 학점대체자(비논문) : 5회 이상 등록하고 4. 5학기 중 논문지도 1학기 이수 혹은 이수에정자
- ② 수료 요건 이외에 전공 2과목을 추가 취득하면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면제되나 이 경우에도 종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. 단, 사회복지학과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 2과목을 5학기 이후에 취득해야 하며, 제 19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시험에 반드시 응시 및 합격하여야 한다.
- 제 15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)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9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특별휴학은 산입하지 않는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(이하 특례대상자라 함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1.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, 질병, 가사, 임신·출산,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 2.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본 시행세칙 제 19조 2항에 의해 종합시험이 면제된 자는 특례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종합시험의 응시를 면제한다. <개정 2013.9.1.>
 3.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.
 4.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.
 5. 특례대상자는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제 16조 (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,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4월 30일, 후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 17조 (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)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 18조 (종합시험의 과목 및 시행)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1. 전공필수 2과목 이상으로 하고, 그 과목 및 내용은 해당 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.
 2.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시행한다.
- 제 19조 (종합시험 응시 및 면제자격) ①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서 3학기 이상을 평균성적 B 이상으로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전 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균성적 B+ 이상인 자에게는 종합시험을 면제하되, 면제신청서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20조 (시험위원회) 종합시험은 대학원장 주관 하에 과목별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장한다.
- 제 21조 (종합시험 합격판정) 시험과목은 과목당 70분으로 하고, 시험성적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- 제 22조 (논문지도료) 이미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에 소정의 논문지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 23조 (논문심사시기) 제출된 석사학위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시험은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판정한다.
- 제 24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.
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.
- 제 25조 (논문심사방법)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 예심에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, 2차 본심에서 논문내용에 대한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.
- 제 26조 (논문합격판정) ① 논문의 평가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A, B, C, F 등급으로 판정하고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②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③ 논문 제출 대상자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시기까지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이 경우, 차후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제 27조 (학위수여 심의) 종합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 28조 (학위수여) 석사학위 종합시험이 면제되었거나 시험에 합격하고,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되었거나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단, 논문은 본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번역서 및 창작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 29조 (장학금)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충실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, 장학금의 수혜자와 장학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- 제 30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[별지서식 1]의 이수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.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때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.
- 제 31조 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.
- 제 32조 (연구과정 이수학점) 본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학과	전공과목	일반선택	합 계
영어번역학과 문학예술학과 ICT콘텐츠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아동코칭학과	6	6	12
사회복지학과	12	6	18

- 제 33조 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- 제 34조 (대학원위원회 회의)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35조 (시험)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하며, 학기 중간에 실시하는 시험

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- 제 36조 (출석) 출석이 전체 수업의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- 제 37조 (유고결석) ① 해외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 ② 유고결석 허용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. 단, 국내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 ③ 유고결석의 기간 중 1/2은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고, 1/2은 결석으로 인정하여 총 결석횟수에 산입한다.
- 제 38조 (강의시간 수 및 보장) ① 실제 강의 시간 수는 과목마다 강의 예정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.
 ② 강의 시간 수가 학점 당 15시간에 미달한 때에는 이를 당해 학기에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 39조 (자격증의 종류) 본 대학원에서는 해당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번역사,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 40조 (자격증시험 응시자격) 번역사(영어번역학과), 논술지도사(문학예술학과)의 자격증 응시자격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 16 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B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9.1.>
- 제 41조 (자격증 시험성적) 번역사, 논술지도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각 과목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기존에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를 면제하고 '기합격'으로 인정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.
- 제 42조 (자격증시험 과목) 번역사, 논술지도사의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.
 1. 번역사: 1) 해당 외국어의 번역시험
 2) 해당 외국어 작문시험
 2. 논술지도사: 1) 수사 및 논리
 2) 문학교육론
 3) 문장론
- 제 43조 (자격증수여) 본 대학원의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는 [별지서식 2]의 번역사 자격증, [별지서식 3]의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한다.
- 제 44조 (폐강) ①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수강인원 3명 미만으로 한다.
 ② 전항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이 수강학생의 수료 및 자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할 수 있다.
 ③ 본조 제2항의 자격이라 함은 학위취득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자격을 의미한다.
- 제45조 (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) 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제5장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9조 제2항 신설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8조 제3항 신설, 제15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15조는 2004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 제2항 삭제, 제22조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39조 내지 제43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39조 내지 제43조는 2007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2조 내지 제13조 개정, 제44조 신설)
2. (경과조치) 제12조는 본 세칙 시행일 현재 지도교수를 신청하지 않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하며, 제13조는 동 시행일 현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5조, 제21조, 제41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 개정시행일 이전 제41조의 ‘기합격 인정’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기존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에 대하여는 교과 26학점 혹은 학점 구분 없이 12과목 이상 이수(논문지도 2회 별도)로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0조, 제29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① 사회복지학과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과 26학점 혹은 학점 구분 없이 12과목 이상 이수(논문지도 2회 포함)로 적용한다.
② 제29조(장학금) 개정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항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0조, 제32조, 제39조 내지 제43조 개정, 별지서식5 삭제)
2. (경과조치) 폐지된 중국언어지도학과의 재적생은 기존 세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0조, 제32조 개정)

부 칙

이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5조, 제29조, 제40조 개정)

부 칙

- 1.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2조, 제14조 ②, 제28조는 시행일 이후 수료 및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.
- 2. 대학원 학칙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제6조, 제7조, 제9조 ~ 제11조, 제14조 ①, 제15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 2조, 제 10조, 제32조, 별지서식 1,2,3 변경) 학과신설 : ICT콘텐츠학과 ICT콘텐츠전공 , 대학원 명칭변경 인문정보대학원-> 문화스포츠대학원)

부 칙

- 1.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29조, 제32조 개정)
학과신설 : 스포츠비즈니스학과, 스포츠비즈니스전공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7조 ⑤ 개정)
- 2. 개정 시행일 전에는 고려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“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”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전공신설 : ICT콘텐츠학과 아동언어코칭전공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학과 및 전공신설: 아동코칭학과 아동언어코칭전공
전공 이전 : ICT콘텐츠학과 아동언어코칭전공을 아동코칭학과로 이동
- 2. (경과조치) ICT콘텐츠학과 아동언어코칭전공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까지 입학 당시 학적으로 수료, 졸업한다.

[별지서식 1] 이수증서

제 호

이 수 증 서

성 명
년 월 일생

교육과정 :

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이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원장 ○○학박사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직인)

[별지서식 2] 번역사 자격증

제 호

번역사 자격증

성 명
년 월 일생

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전공을 마치고 소정의 절차를
거쳐 번역사 자격증 시험 심사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원장 ○○학박사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번역사 자격증을 수여함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고려대 ○○○○(석)○○○○

